

9. 建設業法 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1990. 6. 9 公告

1. 개정의 주요내용 및 취지

가.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외국인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자격에 있어 특례조항을 신설함.

나. 전문건설업자의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 공사협회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긴밀히 함.

다.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조경식재사업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라. 현재 건설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인공어초공사를 토목공사에 포함하

고, 전문공사중 목공사 및 포장유지보수공사의 영업범위를 조정하며, 실내의장공사업을 신설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6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건설경제과 500-290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장과 대표자 성명), 주소